

# EU 조류독감 예방대책

조류독감(Avian Influenza)은 가금류와 기타 조류에서 발생하는 유독하고 전염성이 강한 바이러스성 질병을 의미한다. 조류독감 바이러스는 종류가 다양하고, 이 중에는 치사율이 거의 100%에 이르는 종류도 있다. 야생 조류들은 감염 증세를 보이지 않으면서 전염성이 낮은 바이러스를 옮기고, 농가에서 사육하는 조류가 야생 철새와 접촉하면 감염될 수 있다. 감염된 조류와 직접 접촉하면 경우에 따라 인간과 동물도 조류독감에 감염될 수 있다. 유럽연합(EU)의 조류독감 대책에 대해 소개한다.

## 1. 수입 가금류의 조류독감 예방대책

EU 집행위원회는 아시아, 러시아, 카자흐스탄에서 발병한 조류독감을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 살아있는 조류와 감염 위험이 있는 가금류 제품(신선 가금육, 해당 국가로부터 수입한 살균 처리하지 않은 깃털 등)의 수입은 금지된다. 하지만 이러한 수입 금지 조치는 열 처리(70도 이상)한 가금육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식품사슬 및 동물보건 상설위원회(Standing Committee on the Food Chain and Animal Health)는 아시아의 조류독감 발병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보호조치를 발동할 수 있다. 2005년 8월 현재 수입 금지 국가는 캄보디아, 중국(홍콩 포함),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북한, 파키스탄, 타일랜드, 베트남, 러시아, 카자흐스탄이다.

## 2. 아시아 조류독감 발생 방지를 위한 노력

아시아 지역에서는 전염성 강한 조류독감 발생으로 1억 2500만 마리의 조류가 죽거나 도살 처분되었고,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80~120억€에 이르고 인명 피해도 50명에 달한다.

세계보건기구(WHO), 세계식량농업기구(FAO), 그리고 세계수의협회(OIE)는 각 국 정부들이 효과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조류독감의 발병 규모를 줄이고 아시아 지역의 공중 보건 위험을 낮출 것을 요청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유관 국제기관들과 협력하여 긴급 상황에 대비한 기술적, 재정적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고, 특히 베트남에 대해서는 가금류와 기타 조류를 관리하고 조류독감 전염을 가능한 한 방지하도록 돕고 있다.

## 3. 조류독감에 관한 새로운 EU 지침

EU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조류독감 통제 방식에 관한 지침(2005년 4월 28일 집행위원회 채택)의 목적은 최근 질병 발생 과정에서 얻은 경험과 새로운 과학적 지식에 기초하여 EU 차원의 통제 방식을 개선하는 것이다. 조류독감 통제에 관한 현행 EU 법령은 Council Directive 92/40/EEC인데, 이 지침은 ‘전염성이 강한(highly pathogenic)’ 조류독감에 관한 통제 수단만을 담고 있다. 하지만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전염성이 강한 바이러스도 실질적으로는 ‘전염성이 약한(low-pathogenic)’ 바이러스에서 기인한다고 한다. 따라서 대규모 조류독감 발병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지침 제정 과정에 (야생 조류에서 오리나 거위 같은 사육 가금류로 전염될 수 있는) 전염성이 낮은 조류독감 바이러스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야생조류로부터 전염성을 낮은 바이러스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이 바이러스가 사육하는 가금류로 전염되거나 보다 전염성 높은 바이러스로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것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는 있다. 새로운 입법의 취지는 현재 상황에 가장 적합하고 효율적인 감독, 통제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건강 부담, 경제적 손실을 비롯한 사회적 악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새로운 지침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와 동맹이 반드시 필요하고, 2007년 1월 1일 완전히 발효되기 이전까지 모든 회원국들이 국가 단위에서 비준을 하여야 한다. 영국 의회는 2005년 하반기 의제 중 이 부분을 우선순위로 삼고 있다.

#### 4. 조류독감 발병 현황

근래 세계 가금산업은 조류독감으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2003년 이래로 치명적인 H5N1 바이러스로 인해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만 1억 2,500만 마리의 조류가 죽거나 도살처분 되었다. 이 지역에서 조류독감은 여전히 성행하고 있으며, 이를 완전히 근절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밝혀졌다. 2004년에는 미국, 캐나다, 남아프리카 지역에서도 조류독감이 창궐했다.

EU이 최근에 겪은 대규모 조류독감 발병은 이탈리아(1999~2000년)와 네덜란드, 그리고 벨기에와 독일(2003년) 사례이다. 네덜란드는 조류독감 발병으로 인해 3,000만 마리의 조류를 도살처분 했고, 이로 인한 직접적인 경제손실만 1억 5,000만€에 이르렀다.

2005년 7월 22일 러시아는 카자흐스탄과의 접경 지역에서 조류독감이 발생했다고 발표했고, 같은 달 23일에는 H5 바이러스라는 점을 확인했다. 카자흐스탄도 8월 2일에 조류독감에 감염된 거위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EU은 Directive 92/40/EEC를 통해서 조류독감으로 의심되는 모든 경우에

대해 검역을 실시하고 있고, 전염성이 높은 바이러스로 확인될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감염된 조류를 인도적인 방식으로 도살처분 한다. 사료, 감염된 장비, 분뇨 등도 처분하거나 적절한 처리를 통해 조류독감을 활성화하지 못하도록 한다. 수의학 당국(veterinary authority)은 질병이 발생한 농가와 해당 농가 주변 반경 10km 이내의 농가에 제한 조치를 가함으로써(surveillance zone) 질병의 추가적인 확산을 막는다. 필요한 경우 질병 발생 농가 인접 지역과 해당 농가와 접촉한 농가의 가금류에 대해서 도살 조치(stamp-out)를 시행할 수 있다.

EU 법령에 따르면 모든 회원국은 조류 독감 발생을 가정한 대처 계획을 마련해서 가장 적절한 조치를 즉각 취할 수 있어야 한다. 위생관리와 감염 방지와 같은 농가 단위의 예방책은 필수이다.

## 5. EU 집행위원회의 대응

2004년 3월 20일 EU 집행위원회는 ‘Community pandemic influenza preparedness and response planning’을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EU의 전략 핵심 요소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들었다.

- (1) 국가 단위의 준비 계획 마련과 시범 실시
- (2) 국가 기준시험소간 협력을 통한 발병의 조속한 감지
- (3) 시의적절한 조치를 통한 효과적인 대응
- (4) 조기경보 체계
- (5) 백신과 항생제의 시의적절한 공급

EU 집행위원회는 이 계획을 발표한 이후 회원국 및 세계보건기구와 협력하여 각 회원국의 준비 계획을 개선하도록 돕고 있다. 2005년 3월 2~3일에 열린 워크샵에서는 이 과정을 진행했고, 2005년 하반기에 열린 워크샵에서는 계획안의 미비점을 보완할 것이다. EU 집행위원회는 2005

년 하반기에 ‘지휘소 연습(command-post exercise)’을 조직해서 국가별 담당 기관 간 그리고 EU 담당기관과의 소통, 정보 교환, 상호 협동 등을 시험할 예정이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미 ‘수의학 및 보건 연구소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조류독감에 대비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유럽공동체와 공동으로 자금을 출자하여 유럽조류독감감시계획안(EISS)을 구축하고 있다. EU질병관리통제센터(ECDC)가 이 계획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전망이다.

2005년 4월 6일 EU 집행위원회는 유럽의회와 이사회에 ‘매년 공중위생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상황으로 인해 발생하는 최고 10억€의 비용을 배상하기 위한’ 자금을 조성해 줄 것을 제안했는데, 이 비용은 백신과 항생제 공급 비용도 포함한다. 이 제안에 따라 각 회원국은 해당 비용을 상환 받을 것이다. 이러한 조치는 회원국들로 하여금 사전에 백신과 항생제를 마련하도록 하여 필요한 경우 충분한 공급이 가능하도록 일조할 것이다.

## 6. 연구 활동

EU은 조류독감과 관련된 연구를 위해서 6500만€의 예산을 책정했다. 연구 분야는 새로운 백신 개발, 조류와 인간 간에 질병 감염 과정, 향상된 진단 방식 개발 등이다. EU은 총 1240만€ 규모의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 이는 감염된 사람을 치료하기 위한 새로운 기술 개발, 감독 네트워크 구축, 치료제에 대한 면역성 모니터링, 항생제 사용 효과 계측 등을 목적으로 한다.

출처: EU 식품안전청  
(유찬희 ruledes78@naver.com 019-251-8793 지역아카데미)